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지향 의원 외 20명

나. 의안번호 : 제2801호

다. 제출일자 : 2025. 5. 26.

라. 회부일자 : 2025. 5. 29.

2. 제안사유

-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는 다양한 사회적 혜택을 통해 그 공헌에 대한 예우를 받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로를 함께 함께한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는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배려가 체감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의 유족 또는 가족까지 주차장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하여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 현행 조례에서 감면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독립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등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며 지원대상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7조제1항).
- 나. 참전유공자의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으로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비율로 수정함(안 제7조제1항제1호,제13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6. 3. ~ 2025. 6. 7.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 제출의견 : 수정가결

- 국가에 공헌한 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
- 특히 독립유공자는 전국에 생존하신분이 4명임을 감안하여 유가족까지 면제대상 확대에 동의하나, 전체 유가족이 아닌 독립유공자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유족증 보유자)에 대해 주차요금 50% 할인
- 유가족 중 선순위자에게만 유족증이 발급되고 그 외 가족은 얼굴 등 신원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재함
- 독립유공자 본인이 아님을 감안하여 현행 감면율(80%)보다 낮게 적용(50% 할인)
- 현재 조례상 교통약자 배려차원에서 국가유공자 상이자 본인에 한해서만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나 감면대상을

1) 주차계획과-23848(2025. 6. 9.)

확대하는 것은 종합적인 검토 필요

- 본인을 포함 유·가족 전체에 대한 면제대상 확대 시, 우리 세수 영향 분석 및 현재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해집단에 대한 형평성 고려 필요(*현 조례상 국가유공자 면제대상은 상이자에 한하며 비서울 거주자도 면제)
- 향후 국가유공자 유족·가족 등 예우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 다양한 이해집단의 요구를 고려한 용역 추진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주차 요금 감면방안 마련을 검토해 나가겠음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 요

-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적 혜택과 예우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비롯한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한편 20% 할인을 받던 참전유공자에게도 80%를 감면토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vs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대상자 및 감면율 비교

	대 상 자	감 면 율	기 타
현 행	국가유공자 상이 ²⁾ 고엽제후유(의)증 독립유공자	80%	환승주차장 3시간무료 이후 80% 감면
	참전유공자	20%	
개정안	국가유공자 ³⁾ 고엽제후유(의)증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 유족 또는 가족으로 국가 및 지방보훈청에 등록 확인되는 자 (등록 유가족)	80%	환승주차장 3시간무료 이후 80% 감면

- ※ 개정안 ① 국가유공자 전체 + 그 유족(가족)으로 면제 대상 확대
② 참전유공자 감면율 상향(20%→80%)

2)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3)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나. 검토의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등⁴⁾을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도모하고 있음〔별첨 참조〕

- 현행 조례 제7조⁵⁾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4. 전상군경(戰傷軍警) 5. 순직군경(殉職軍警) 6. 공상군경(公傷軍警)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 10. 참전유공자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또는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2. 4·19혁명부상자 13. 4·19혁명공로자 14. 순직공무원 15. 공상공무원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① 시장은제6조제1항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시간측정계기 또는 바로녹색결제시스템으로 각 호의 자격이 확인이 되는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 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및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12호·제13호·제15호 등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등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 본인에게 주차요금 100분의 8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100분의 2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24년 경우 현행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에 대한 감면액은 3억 34백만원 임

※ 최근 3개년도 서울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현황

대 상 자	감 면 율	'22년 감면액	'23년 감면액	'24년 감면액
국가유공자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독립유공자	80% 감면 (환승주차장 3시간무료 이후 80% 감면)	359백만원	359백만원	333백만원
참전유공자	20% 감면	1백만원	1백만원	1백만원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국가유공자법 일부 상이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 당사자에게만 적용하던 주차요금 80% 감면 혜택을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국가유공자 대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독립유공자들의 유족 및 가족에게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법 제3조⁶⁾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는 점에서 그 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

※ '24년도 서울시 보훈대상자 현황

(2024. 5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총계	독립 ⁷⁾ 유공자	참전 유공자	4·19 유공자	5·18 유공자	특수 임무 유공자	재일 학도 의용군	고엽제 후유 의증자	상이군경 (전상/ 공상)	공상 공무원	전몰·순직 군경유족	무공 수훈자
총 계	112,281	2,223	38,885	343	572	569	41	7,128	36,047	681	8,420	17,372
본 인	68,412	1	38,885	156	474	387	1	7,128	18,316	327	0	2,737
유 족	43,869	2,222	0	187	98	182	40	0	17,731	354	8,420	14,635

- 다만, 현행 조례에서는 주차 요금 감면에 있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소지를 서울시로 국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으로 전국의 모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서울시 운영 주차장 이용시 감면 대상자가 되는 만큼 정책 시행 전에 국가보훈부 등과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세수 감소에 대한 분석도 일부 필요해 보임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또한, 서울시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족현황 파악이 아직 미비하고 유족에 대한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기존에 주차장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에 대한 주차요금 50%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동 조례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은 국가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취지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그 대상과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동 개정조례 취지에 부합하는 대상을 선별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으로 향후 서울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주차 감면 정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감면 방안 등에 대한 행정적 사전 준비도 필요하다 할 것임

[별 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 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또는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의결된 사람